



제433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의 정부 책무 규정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21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의 정부 책무 규정	2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16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의 정부 책무 규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고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4조 및 안 제16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② (생략)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u>제7호까지</u> 및 <u>제9호의</u> 사항에 관한 업무	1. ----- <u>제7호까지</u> , <u>제9호 및 제10호의</u> ----- -----
2. ~ 41. (생략)	2. ~ 41.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다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4조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 |
|--|
|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

개정안은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로 이해됨.

법률에서 규정되는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여 법률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되는 내용이 다소 광범위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4항제5호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현재 고용노동부 사업으로¹⁾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또한 현행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업종 및 재해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제천, 담양, 여수, 익산, 인천 등 5개 안전체험교육장과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어 신

1)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과 산재예방시설건립(4154-351)으로, 2026년 기준 각각 약 345억원과 28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각각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역사업과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시설개선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히 검토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45